



발행일 2020년 07월 28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제158호

NARS

현안분석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현황 및 과제

한인상*

- 01 I. 들어가며
- 02 II.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개관
- 05 III.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추진 현황
- 08 IV.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성과와 한계
- 12 V. 향후 과제

요약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신규채용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장려금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추진 현황, 성과 및 한계는 다음과 같음
 - 동 사업은 2020년 1조 4,259억 원(기금운용계획 변경 포함)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8년 128,275명, 2019년 229,306명, 2020년 6월말 202,840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 동 사업은 청년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예산의 조기 소진 및 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기금변경, 사업효과성, 재정부담, 부정수급 관리, 사업종료 이후 후속대책 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됨
- 따라서 앞으로 정확한 추계에 기반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 세밀한 양적·질적 분석을 통한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
- 또한 사업 및 지원 종료 이후 참여자 및 참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02-6788-4731
 ishan@assembly.go.kr



I. 들어가며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후적으로 고용증가분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신규채용 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에 따라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 본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 재정투입을 통해 청년의 신규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있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2017년, 2018년, 2019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 업종 및 대상 확대, 지원한도 및 인원 제한의 조정 등 제도개편이 있었음
 - 최초 지원 대상 업종이 성장유망업종이었다가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인원 한도 조정(30명),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 기준 등의 개편이 있었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2017년 이후 예산(기금운용계획 변경 포함)이 지속적으로 증액되었고, 지원 인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2017년 45억 원, 2018년 3,396억 원, 2019년 8,897억 원, 2020년 1조 4,259억 원으로 예산의 규모가 커졌으며, 동 사업으로 2017년 292명, 2018년 128,275명, 2019년 229,306명에게 각각 지원이 이루어졌고, 2020년 6월말 기준 202,840명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사업장에서의 호응 및 활용도가 높고, 사업 시행 이후 청년의 신규고용 확대 및 참여기업의 피보험자수 증가 등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재정확보, 사업 집행, 사업 종료 이후 후속 조치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음
 - 첫째, 동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정소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신속한 신규채용 촉진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고용유지 역시 사업 취지의 하나라는 점에서 지원자의 지원기간별 고용유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둘째, 동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필요하나, 예산의 조기 소진 및 부족으로 신규 신청 및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남
 - 셋째, 동 사업은 2021년까지 유지되는 한시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종료 이후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화 대책이 필요함
- 이하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II.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개관

1. 사업의 의의

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¹⁾의 세부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1년까지의 한시사업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 사업장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고용 청년근로자 증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에코세대 등 청년인구증가,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경제상황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음
 - 동 사업은 구직·채용·근속 등 각 단계별²⁾로 재정투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 수단 중 채용단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4호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³⁾,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제4호),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당초 지원대상 업종 '성장유망업종'이었으나, 2018년 사업의 제도개편 과정에서 확대되었음

나. 도입 및 추진 배경

- '청년, 좋은 일자리 확대'의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정책 수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청년, 좋은 일자리 확대'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추경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사업임

1)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은 고용창출 및 훈련 프로그램의 단위사업임. 2016년까지 각 세부(내역)사업으로 운영되던 '고용촉진지원금', '시간선택제일자 리지원', '장년고용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고용지원' 사업이 20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개편)되었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2017년 추경으로 반영됨.

2) 각 단계별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구직단계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이 있고, 근속단계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음.

3) 기술혁신 또는 융합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해 나가는 업종(분야)으로서, 관계부처에서 발표추진된 신산업 육성분야에 해당하거나, 법령에 따라 고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등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지정된 업종(분야).

- 동 사업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으로 시작되었음

□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바 특단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 대두

- 청년세대는 1990년대 이후 고용 부진이 심화되었고, 특히 체감실업률은 2015년 이후 20%을 상회하는 등 청년고용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됨
 - 전체/청년 실업률 격차(%) : 90년대 3.4%p (3.3/6.7) → 2017년 6.1%p (3.7/9.8), 청년 체감실업률(%) : 2015년 21.9%, 2016년 22.1%, 2017년 22.7%
 - 청년 고용부진 심화는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누적, 일자리 수요부진·미스매치의 지속에 기인한바 큼. 특히 저성장 기조 속에서 취업유발계수가 낮아지는 등 신규인력 수요 부족,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심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이동이 어려움
- 또한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와 2008년 ~ 2010년 입학했던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시기가 겹치는 시점에는 구직경쟁 격화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음
- 정부는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음

□ 청년일자리 대책 중 주요 정책 수단인 하나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게 됨

-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한시적인 대책과 구조적인 과제에 대한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18년부터 2021년 4년 한시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시행함⁴⁾

2. 주요 내용 및 제도개편

가. 주요 내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됨

□ 주요 지원요건

- 기업규모별로 기업이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 30인 미만의 기업은 1명, 30인 이상 99인 미만의 기업은 2명, 100인 이상의 기업은 3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2019년 신규 성립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함
-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로 채용함으로써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4) 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 종합 자료」, 2018. 3. 15, p.28

□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기업이 청년 1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30명 까지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

□ 사업의 추진체계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며, 사업의 수혜자는 지원요건을 갖춘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임

나. 제도개편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 업종 확대, 지원인원 확대 등 사업과 관련하여 몇 차례 제도개편이 있었음

- 국회 예산 및 결산 심사 과정⁵⁾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점 해소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17년, 2018년 2차례, 2019년 주요한 제도개편이 있었음
- 동 사업은 시행 초기 성장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에 지원업종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었음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제도개편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표 1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주요 제도개편 내용

| 구분 | '17년 추경 | 1차 개편('18.1.16) | 2차 개편('18.3.15) |
|------|-------------------------------|--|---|
| 대상업종 | ○ 성장유망업종 -233개 업종, 18만개 기업 | ○ 성장유망업종 확대(지식서비스산업 등 추가) + 전후방산업 추가 - 499개 업종, 73만개 기업 | ○ 5인 이상 전체 업종 - 제외: 사행산업, 유흥업, 청소년유해업소, 공공기관 등 ○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 포함 |
| 기업규모 |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추가 |
| 지원방식 | ○ 3명 고용 시 1명 지원(6명/2명, 9명/3명) | ○ 3명 이상 고용 시 비례지원(4인 고용 시 1.33명) | ○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 - (30인 미만) 1명 고용 시부터 모두 - (30~99인) 2인 고용 시부터 모두 - (100인 이상) 3인 고용 시부터 모두 |
| 지원금액 | ○ 3년간 연 2,000만원(1인당 667만원) | ○ 3년간 연 2,000만원(1인당 667만원) | ○ 1인당 연900만원, 3년간(고용위기지역 500만원 추가) |
| 지원한도 | ○ 중소기업당 3명 | ○기업당 90명(2+1기준 30명) | ○기업당 90명(2+1기준 30명) |

□ 2019년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정규직 채용 취지 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의 주요한 사항이 개편됨

- (기업 최대 인원 지원한도)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소규모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인원을 기존 9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함
- (최소고용유지기간 설정) 청년의 정규직 채용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무 확인 후 지급하도록 개편함

5)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년도 결산 검토보고(부처별Ⅳ) - 환경노동위원회』, 2019, p.1715.

- 정규직 채용여부를 근로계약서로 판단하였는데,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 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정규직 채용여부를 채용 직후에는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6개월 이상 근무 확인 후 지급하도록 함
- (기업규모별 지원인원 차등) 기존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 시 모두 지원하였으나, 30~99인은 2번째,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자부터 지원함
 - 장려금과 무관하게 통상 증가하는 수준의 인원은 지원 제외함

|표 2| 사업의 지원한도 및 지원인원 차등 개선 사항

| 구분 | 현행 | | | | ⇒ | 개선 | | | |
|---------|-----|-------|-------|-------|---|-----|-------|-------|-------|
| | 1 | 2 | 3 | 4 | | 1 | 2 | 3 | 4 |
| 고용 | | | | | | | | | |
| 30인 미만 | 900 | 1,800 | 2,700 | 3,600 | | 900 | 1,800 | 2,700 | 3,600 |
| 30~99인 | x | 1,800 | 2,700 | 3,600 | | x | 900 | 1,800 | 2,700 |
| 100인 이상 | x | x | 2,700 | 3,600 | | x | x | 900 | 1,800 |

- (신설 사업장 지원인원 한도 설정) 기존 기업 성립일말 피보험자보다 증가한 인원 모두 지원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신설연도는 지원한도 설정(성립일말 피보험자 수가 1~4인 경우 3명, 5~9인 경우 6명)하여 사업 초기 필수인력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예방함

Ⅲ.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추진 현황

1.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가. 사업 예산의 규모

□ 2017년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었음

- 동 사업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2017년 45억 원(사업비 기준) 규모였으나, 2018년 3,396억 원(기금운영계획 변경 포함), 2019년 8,897억 원(기금운영계획 변경 포함), 2020년 1조 4,259억 원(기금운영계획 변경 포함) 규모로 예산이 급속하게 증액되었음
- 동 사업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된 이후 2018년부터 연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기금운영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도개편에 따른 지원대상의 확대, 지원자의 고용유지율에 대한 부정확한 추계에 기인한 것이며, 그 결과 예산의 조기 소진 및 부족, 신청 및 지원 중단의 결과가 발생한 바 있음

|표 3| 2017년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내역(사업비 기준)

(단위: 백만원, %)

| 연도 | 본예산 | 변경 | 증감률(예산현액기준) |
|------|---------|-----------|-------------|
| 2017 | 0 | 4,500 | - |
| 2018 | 192,000 | 339,662 | 7,448 |
| 2019 | 673,508 | 889,749 | 161.9 |
| 2020 | 990,900 | 1,425,960 | 60.2 |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20. 7. 20)

나.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집행 현황

- 2019년도 당초 신규 지원인원 목표 9.8만 명은 이미 5월 초에 달성하였고, 이로 인해 5월 10부터 신규 신청이 중단되었음
- 2019년도 8월 기금운용계획 변경(8,897억 원)으로 다시 재개되었으나, 2019년도 사업 예산 소진으로 지원금 지급이 다시 일시 중단(2019. 10. 17)되었고, 2019년 말 신청자의 경우 2020년 예산 확보로 지급되었음

표 4 | 2017년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집행 내역(사업비 기준)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 지원연도 | 계획 | 변경 | 사업장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집행률 |
|--------|---------|-----------|--------|---------|---------|------|
| 2017 | 0 | 4,500 | 247 | 292 | 1,425 | 31.7 |
| 2018 | 192,000 | 339,662 | 29,571 | 128,275 | 330,754 | 97.4 |
| 2019 | 673,508 | 889,749 | 46,664 | 229,306 | 889,630 | 99.9 |
| 2020.6 | 990,900 | 1,425,960 | 44,022 | 202,840 | 999,181 | 70.1 |

※ 주: 지원인원은 기존, 신규 포함된 인원임.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20. 7. 20)

□ 2020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 2020년도 동 사업의 월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6월말 기준 9,991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2020년 본예산의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기금변경 예산액의 약 70%를 집행함

표 5 | 2020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월별 예산 집행 현황(사업비 기준)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 기간 | 추진현황 | | |
|---------|--------|---------|---------------|
| | 지원 사업장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 2020. 1 | 29,548 | 122,301 | 346,439(24.3) |
| 2020. 2 | 33,959 | 145,391 | 473,564(33.2) |
| 2020. 3 | 37,155 | 163,189 | 595,917(41.8) |
| 2020. 4 | 39,613 | 178,292 | 709,873(49.7) |
| 2020. 5 | 41,888 | 189,734 | 858,621(60.2) |
| 2020. 6 | 44,022 | 202,840 | 999,181(70.1) |

※ 주: 지원 및 집행액은 누계 기준임.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20. 7. 20)

2. 지원 현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으로 2017년 292명, 2018년 128,275명, 2019년 229,306명을 각각 지원하였고, 2020년 6월말 기준 202,840명을 지원함
 - 2020년 6월말 기준 202,840명에는 약 6만 명의 신규 신청 인원이 포함되어 있음
- 기업규모별 지원 현황(2019년 기준)
 - 기업규모별 지원 사업장의 비중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3.2%로 가장 높고, 100인 이상 사업장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5~29인 사업장의 비중이 6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지원액을 기준으로 보면 30인 미만이 50%로 가장 높으나,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지원액 역시 26.2%로 지원 사업장의 비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6 | 기업규모별 지원 사업장 및 지원액 현황(2019년 기준)

(단위: 개소, 억원, %)

| 기업규모 | 사업장 수(비중) | 지원액(비중) |
|--------|---------------|--------------|
| 계 | 46,664(100.0) | 8,896(100.0) |
| 30인 미만 | 38,826 (83.2) | 4,446 (50.0) |
| 5인 미만 | 10,180 (21.8) | 764 (8.6) |
| 5~29인 | 28,646 (61.4) | 3,682 (41.4) |
| 30~99인 | 5,669 (12.1) | 2,120(23.8) |
| 100인~ | 2,169 (4.7) | 2,330(26.2) |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20. 7. 20)

□ 업종별 지원 현황(2019년 기준)

- 업종별 지원 사업장의 비중은 제조업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도매 및 소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지원액의 비중은 역시 제조업이 31.1%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남

표 7 업종별 지원 사업장 및 지원액 현황(2019년 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

| 업종 | 사업장수(비중) | 지원액(비중) |
|------------------|----------------|-----------------|
| 계 | 46,664 (100.0) | 889,630 (100.0) |
| 제조업 | 12,565 (26.9) | 276,563 (31.1) |
| 도매 및 소매업 | 8,498 (18.2) | 129,717 (14.6) |
| 정보통신업 | 5,355 (11.5) | 119,309 (13.4) |
| 숙박 및 음식점업 | 1,240 (2.7) | 22,443 (2.5)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6,660 (14.3) | 104,632 (11.8) |
| 사업시설관리및임대서비스업 | 1,247 (2.6) | 31,111 (3.5)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6,512 (13.9) | 131,860 (14.8) |
| 기타 | 4,587 (9.8) | 73,995 (8.3) |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20. 7. 20)

IV.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성과와 한계

1. 사업의 성과

□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청년의 고용 및 기업의 피보험자 수 증가 등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가 2019년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사업에 최초 참여한 사업장(10,677개사)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의 시행 후(2018년) 기업 당 평균 청년 신규채용이 전년 대비 6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시행 후 청년채용 현황

| 년도 | 참여기업 수(a) | 참여기업 총 청년 채용인원(b) (전년대비) | 기업당 평균 청년 채용인원(b/a) (전년대비) |
|------|-----------|--------------------------|----------------------------|
| 2017 | 7,726 | 37,610 | 4.9명 |
| 2018 | 9,684 | 40,458 | +7.6% |
| 2019 | 10,677 | 75,417 | +86.4% |

※ 주: '참여기업 수' 10,677개사 중 신설은 2018년 1,958개, 2019년 993개사업

※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 결산 설명자료(2020. 5)

- 또한 제도 시행 이후(2018년) 참여기업당 평균 피보험자수가 16.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청년층은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시행 후 기업당 평균 피보험자 변화

| 사업년도 | 참여기업 당 피보험자수 (전년대비) | 참여기업 당 청년 피보험자수 |
|------|---------------------|-----------------|
| 2017 | 19.1명 | 7.5명 |
| 2018 | 19.9명 (+4.1%) | 7.4명 (△0.4%) |
| 2019 | 23.1명 (+16.4%) | 9.2명 (+24.6%) |

※ 주: '19년도 최초 지원받은 기업 10,677개사 중 동일사업장의 '17~19년 3년간 비교를 위해 '18~'19년 고용보험신규성립사업장(2,951개사) 제외, 7,726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함

※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 결산 설명자료(2020. 5)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신규채용 촉진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고용유지를 통한 장기근속의 유도에도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지원자의 고용유지율은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2018년 참여자의 고용유지율이 6개월 83.6%에서 1년 68.8%, 1년6개월 55.9%, 2년 53.1%로 하락하고 있으나, 2019년 제도개편 이후 1년 고용유지율이 87.3%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표 10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자의 고용유지율

| 채용연도 | 고용유지율(%) | | | |
|---------------|----------|------|--------|------|
| | 6개월 | 1년 | 1년 6개월 | 2년 |
| 2018 | 83.6 | 68.8 | 55.9 | 53.1 |
| 2019 (제도개편 전) | 82.5 | 67.9 | 55.6 | - |
| 2019 (제도개편 후) | 99.2 | 87.3 | - | - |

※ 주: 2019년 고용유지율은 제도개편(2019. 8) 전후 신규지원자 기준으로 구분함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20. 7. 16)

-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성과 및 고용지표 개선 효과를 분석 자료⁶⁾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전부가 신규 고용 창출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쇄효과가 크지 않고 순수 고용효과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남
 - 위 연구는 동 사업의 고용효과 가운데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전치효과(replacement effect) 등의 상쇄효과를 고려하면, 순수 고용효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약 30%~50% 정도로 추정함
 - 위 연구의 지원기업 대상 집단심층면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고용창출의 효과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령 간 대체와 같은 상쇄효과의 가능성도 있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함
 - 신규 인력 충원에 따른 야근 감소 등 근로시간 및 업무부담 감소 등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생기업, 영세기업 등에서 청년고용을 위해 활용되어 이들 기업의 채용이나 근로환경 개선에 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기업성장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기도 함
- 성과지표 상으로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규채용 촉진, 고용유지기간 및 고용유지율의 상승 등 청년실업의 해소 및 고용유지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⁷⁾
 -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지원 사업장의 고용증가율과 지원자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2019년 고용증가율이 전년 대비 2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 고용유지율도 2019년 제도개편 이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6) 최강식 외 5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성과 및 청년 고용지표 개선 효과 분석』, 고용노동부, 2019. 동 연구보고서는 고용보험 DB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효과에 대한 양적 분석, 참여사업장 설문조사,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 대상 FGI 조사 등을 통해 고용효과를 분석함.

7)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5.2만개 사업장에서 26.9만 명의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신규채용율도 시행 전에 비해 증가함.

2. 한계

- 동 사업은 시행 초기 지원 대상 업종 및 범위의 한정, 사업효과에 대한 비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정수급 사례 등의 이유로 수차례 제도개편이 있었음
 - 소수 기업에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업당 지원한도를 30명으로 축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업규모별로 지원인원에 차등을 두는 제도개편이 이루어진 바 있음
 - 또한, 애초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로 채용한 후 지원 신청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최소고용유지기간’을 6개월로 선정하는 등의 제도개편이 있었음
 - 사업의 부작용 최소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동 사업에 대한 호응 및 활용도를 고려할 때 잦은 사업 개편은 참여기업 및 참여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전제되어야 하나, 동 사업은 제도개편에 따른 변화 및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예산의 조기 소진 및 부족이 발생하였고, 신규 신청 및 지원 중단,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함⁸⁾
 - 2019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5월 신청이 중단된 바 있었고,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2019. 8. 20. 신규 신청이 재개되었으며, 2019. 10. 18. 예산소진으로 지원이 중단된 바 있었음
 - 동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 이후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규모 역시 큰 편임
- 동 사업은 사업 초기 홍보 부족 등으로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⁹⁾, 최근 사업에 대한 기업의 호응도 및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고용유지율이 유지·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2020년 동 사업의 예산은 2018년 대비 1조 1,000억 원 이상 증액된 1조 4,259억 원이 편성되었고, 동 사업이 2021년까지의 한시사업이나 2021년 신규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이 유지되는 한, 2024년까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시행된 이후(2017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의 고용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첫 직장 취업 소요기간’, ‘해당 기간 첫 직장 근속기간’의 지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을 통한 지원자의 고용유지율이 지원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함
 - 통계청의 연간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¹⁰⁾, 첫 직장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2017년 10.6개월에서 2019년 10.8개월로 0.2개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5.6개월에서 1년 5.3개월로 0.3개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8)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20, p.47 이하.

9) 2017년 추경예산의 경우 지원목표인원이 900명이었고, 편성 예산이 48억 원이었음에도 지원인원 달성비율은 32.4%에 불과하였고, 예산집행률 역시 35.7%에 불과하였음.

10)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장정책분석 III (고용)』, 2020, p.81.

- 2018년 지원자의 1년 6개월, 2년 고용유지율이 50%대로 하락하였고, 2019년 제도개편으로 최소고용유지기간 설정된 이후 6개월의 고용유지율은 약 99%이나 1년 고용유지율이 87.3%로 떨어짐
 - 다만, 동 사업이 청년 고용지표 및 첫 직장 취업 소요기간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준수험적 평가 등을 통해 엄밀하게 추정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고용효과 가운데 사중손실,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의 상쇄효과를 고려하면, 순수 고용효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약 30%~50% 정도로 추정됨
- 이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인원 중 50%~70%는 지원이 없었더라도 고용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2017년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포함한 고용창출장려금의 부정수급 건수 및 부정수급액이 연평균 각각 29.1%, 27.9% 증가함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지적됨¹¹⁾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요건 및 자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동 사업은 2021년까지 유지되는 한시사업으로 고용된 이후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3년 후 지원이 종료되었을 경우,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최근 연구의 참여기업 설문조사¹²⁾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폐지될 경우 현재 고용된 인원이거나 신규 채용인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한 기업이 약 30%에 이르며,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강하게 나타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핵심인력 유지 등 어느 정도 인력 규모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영세기업 등의 경우 신규채용이나 고용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11) 국회예산정책처, 위의 보고서. p.75.

12) 최강식 외 5인, 위의 보고서, 2019. p.105.

V. 향후 과제

1. 사업의 철저한 관리 및 집행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2019년 성과 및 고용 효과 분석 이후 사업의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사업의 개편 및 관리, 성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책의 성과, 사업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사업 중 2020년을 기준으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며,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임
 - 특히 2019년 8월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편이 있었다는 점에서, 제도개편 이후 참여기업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기업규모별·업종별·직종별 특성 및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함
 -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각 특성에 맞는 사업 개편, 지원 방식의 다양화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효과성 제고는 적정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조기 소진 및 부족, 신규 신청 및 지원 중단,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동 사업의 2021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고용유지율 등 관련 지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 고용유지기간 상향조정 등 제도개편에 따른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의 부작용 최소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동 사업에 대한 호응 및 활용도를 고려할 때 잦은 사업 개편으로 참여기업, 참여자, 참여를 원하는 기업 등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개편된 제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창출장려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지원요건 및 자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허위신고 및 서류변조, 출·퇴근 확인 등 현장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공유하고,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147호)에 따른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현장에서의 활용률은 높은 편이나, 동 사업의 취지가 ‘신속한’ 신규채용 촉진에 있으므로 첫 직장 취업 기간의 단축을 위한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동 사업의 지원으로 지원 대상 청년의 취업은 촉진될 수 있으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의 취업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최근 청년의 비정규직 고용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설)은 동 사업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의 입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첫 직장의 취업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취지는 신규채용 촉진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의 유도에도 있다는 점에서 지원자의 고용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지원자의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해 참여자 및 참여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이탈 기업의 규모·업종·직종의 특성, 이탈자의 인적 속성, 이직 등 이탈의 사유 등 고용유지율 하락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활용이 업종, 직종, 기업규모에 따라 다른 특성이 있을 수 있고, 고용유지율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서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 기업 및 인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지도가 필요함

3. 사업 및 지원 종료 이후 후속대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2021년까지 유지되는 한시사업이므로, 사업 및 지원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바, 지원자에 대한 사후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세밀하고 철저한 양적·질적 분석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 사업 종료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후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의 종료 및 사업이 폐지될 경우, 현재의 고용인원이나 신규채용 인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우려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바, 사업 종료 이후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핵심인력 유지 등 어느 정도 인력규모가 유지될 수 있으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비용부담으로 고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시에 폐지하기 보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호응도 및 활용도가 높고 대체로 타 고용보조금 사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양호한 편임. 청년실업난 속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으로 인한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고용의 취약계층이 청년이라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의 임금구조 왜곡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평가를 거쳐 정책의 지속여부와 세부 운영방식의 변경 등 세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특히 동 사업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더라도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업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경우,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 업종, 청년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고용보조금 사업은 막대한 재정투입의 부담과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 지원은 축소하는 한편, 청년층에 대한 취업알선·직업능력개발 등 체계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
-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020. 7. 20)
-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020. 7. 16)
- * 고용노동부, 2019년 결산 설명자료(2020. 5)
- *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장정책분석 III (고용)』, 2020
-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년도 결산 검토보고(부처별IV) - 환경노동위원회』, 2019
-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20
- * 최강식 외 5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성과 및 청년 고용지표 개선 효과 분석』, 고용노동부, 2019

R E P O R T · L I S T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 호수 | 제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157호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 및 향후 과제 | 2020.7.27. | 김진선 |
| 제156호 |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 2020.7.22. | 구세주 |
| 제155호 |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 2020.7.14. | 류영아 |
| 제154호 | 안전체험관 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 2020.7.7. | 배재현 |
| 제153호 |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 2020.7.3. | 유제범 |
| 제152호 | 해외 주요국 공휴일 제도와 국내 공휴일 법제화 논의 | 2020.6.30. | 이승림 |
| 제15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2020.6.22. | 허민숙 |
| 제150호 |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 재발 현황과 과제 | 2020.6.18. | 정영주 |
| 제149호 |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 2020.6.18. | 최미경 |
| 제148호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 | 2020.6.16. | 하혜영 |
| 제147호 |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 | 2020.6.16. | 조인식 |
| 제146호 |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 | 2020.6.16. | 박혜림 |
| 제145호 |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 | 2020.6.9. | 형혁규 |
| 제144호 |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 2020.6.4. | 김여라 |
| 제143호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 2020.6.4. | 박준환 |
| 제142호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및 향후 과제 | 2020.6.3. | 조서연 |
| 제141호 |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과제 | 2020.5.30. | 김진수 |
| 제140호 | 전기저장시스템(ESS)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20.5.30. | 유재국 |
| 제139호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 | 2020.5.30. | 문은희 |
| 제138호 | 금융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디지털금융 혁신의 동향과 향후과제 | 2020.5.30. | 조영은 |
| 제137호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 2020.5.29. | 노성준 |
| 제136호 | 보험설계사의 고지(告知)의무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 2020.5.27. | 김창호 |

| 호수 | 제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135호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 | 2020.5.19. | 최병근 |
| 제134호 |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 | 2020.5.4. | 허민숙 |
| 제133호 |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 2020.4.28. | 김예성 |
| 제132호 |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경영 현황과 향후 과제 | 2020.4.7. | 정준화 |
| 제131호 |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 2020.4.3. | 최미경 |
| 제130호 |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 | 2020.4.2. | 박진우 |
| 제129호 |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20.4.1. | 김경민 |
| 제128호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공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 2020.3.30. | 조규범 이재영 배정훈 |
| 제127호 | 적합성평가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20.3.30. | 김종규 |
| 제126호 |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20.3.25. | 장영주 |
| 제125호 |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 | 2020.3.23. | 임언선 |
| 제124호 |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 2020.3.18. | 황현영 |
| 제123호 |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 | 2020.3.9. | 이만우 |
| 제122호 |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2020.3.5. | 허민숙 |
| 제121호 |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 2020.3.3. | 허민숙 |
| 제120호 | 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 2020.3.2. | 이덕난 |
| 제119호 |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 | 2020.2.24. | 김선화 |
| 제118호 | 수산부산물(水産副産物)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 | 2020.2.20. | 유제범 김경민 |
| 제117호 |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 2020.2.12. | 최미경 |
| 제116호 | 「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 | 2020.2.6. | 형혁규 |

제158호

NARS

현안분석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현황 및 과제

